

직종별 청탁방지담당관 교육

• 공무원

- 일시 : 2016.9.6(화)
- 장소 : 세종청사 6동 대강당

• 공공기관 임직원

- 일시 : 2016.9.8(목)
- 장소 : 세종청사 12동 대강당

• 교육청 및 교직원

- 일시 : 2016.9.9(금)
- 장소 : 세종청사 12동 대강당

• 언론기관 종사자

- 일시 : 2016.9.12(월)
- 장소 :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목차

(1차시)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	1
(2차시) 1.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사례 발표자료	27
2. 교직원 관련 사례 발표자료	61
3. 언론사 관련 사례 발표자료	93
(붙임) 주요 내용	117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내용	133
청탁금지법-시행령(안) 2단 비교표	139



1차시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1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은 수준

'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일반국민의 부패인식 수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



57.8%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일반국민의 부패인식 수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



공무원의 부패인식 수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

57.8%

‘인식의 차이’
54.4%p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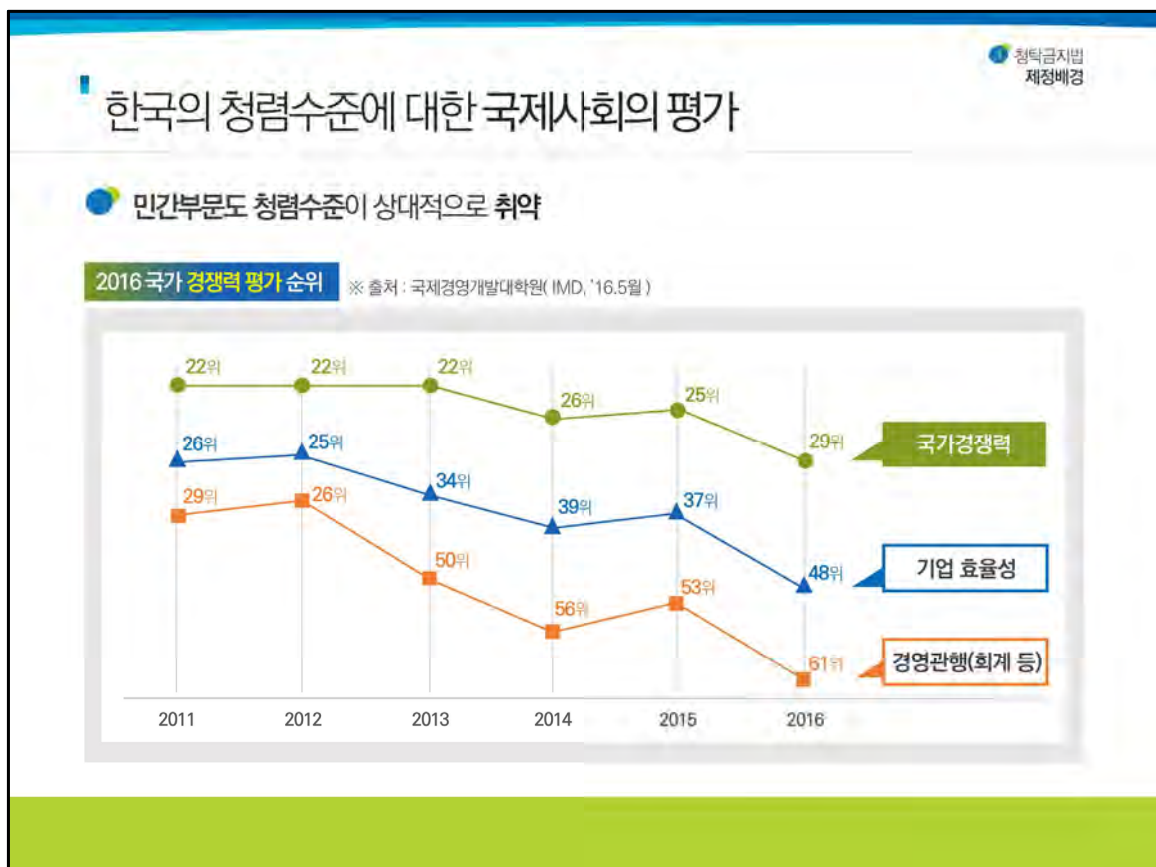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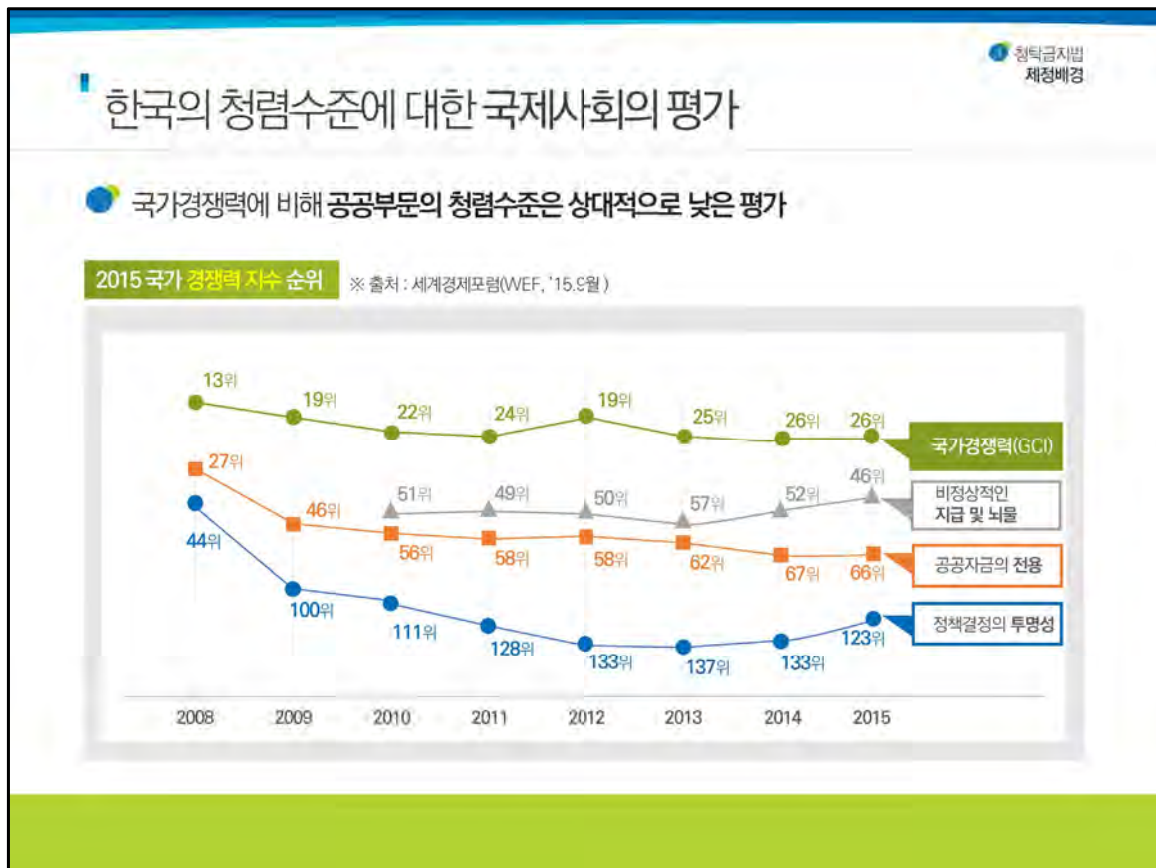
'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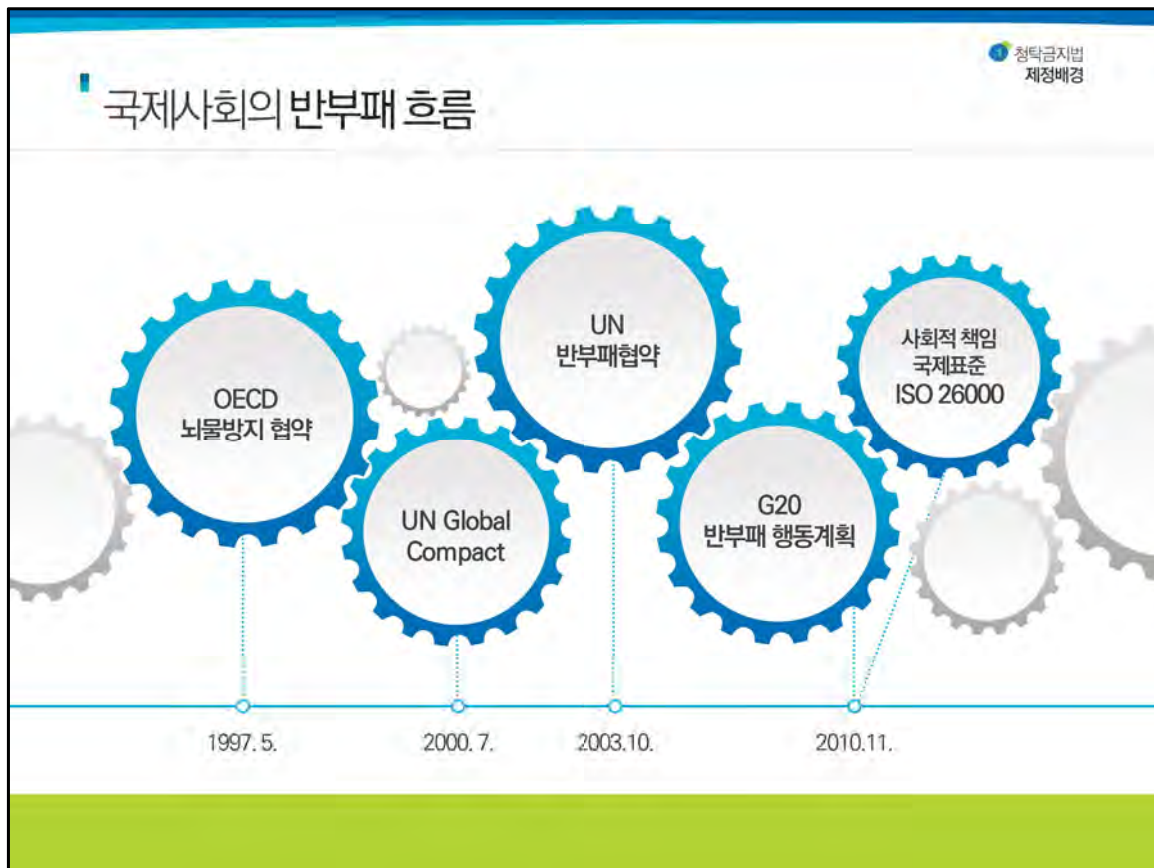
'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일반국민과 공직자의 인식의 차이가 시사하는 점

- ▶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의미
- ▶ 국민들의 시각에서 '부패'를 공직자들은 관행으로 여겨 문제의식을 갖지 못함







법률 적용대상

3. 침탁금지법 주요내용

 적용 대상기관



-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 대상자



- ✓ (공직자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 공직자등의 배우자
- ✓ 공무수행사인
 -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부정청탁의 금지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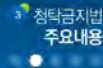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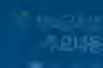




부정청탁의 금지 금지행위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1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8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9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10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1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2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3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4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5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금지행위 자세히 보기

1.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인가·허가·면허·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입찰·경매·개찰·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보조금·장려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금지행위 자세히 보기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지위·권한 남용
위 1호부터 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 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 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금지

예외사유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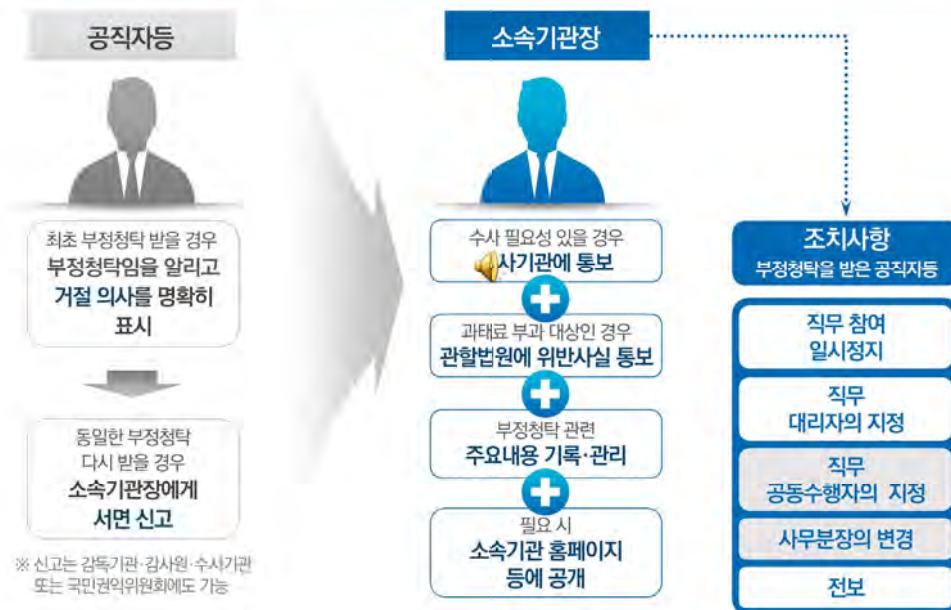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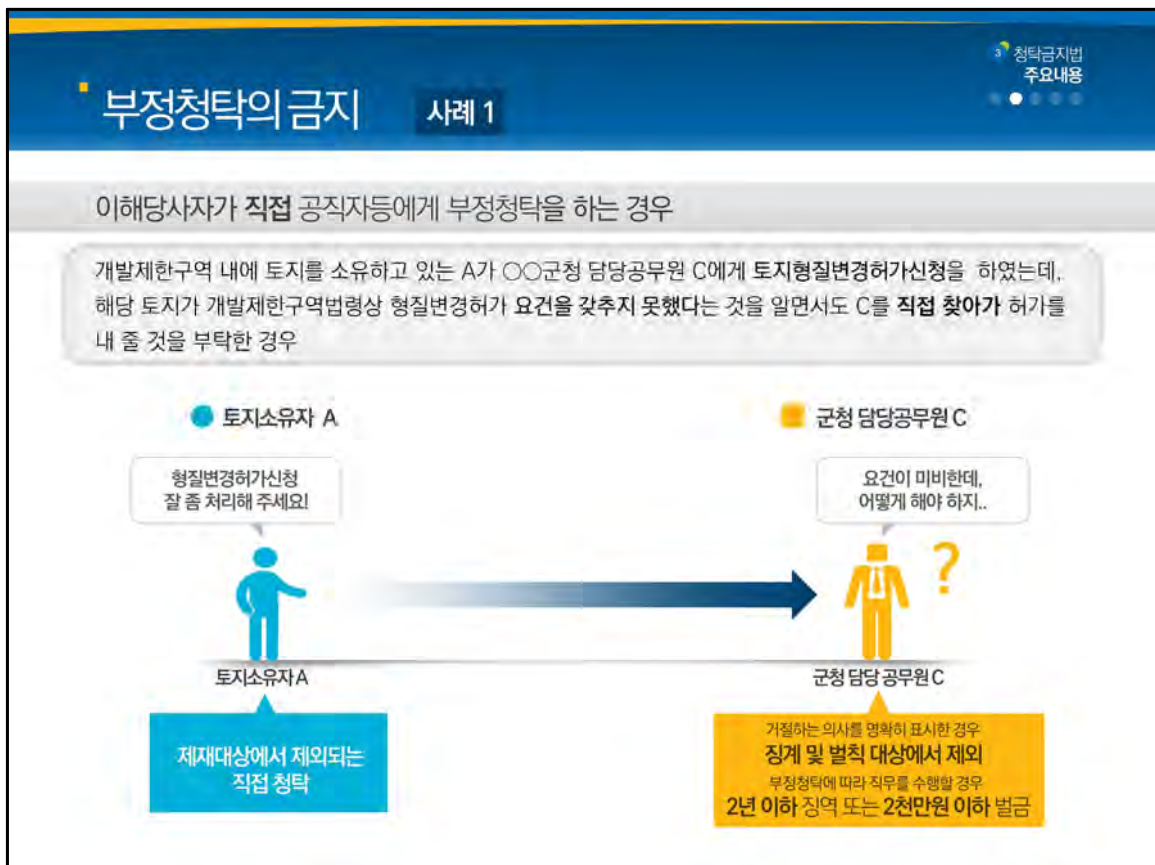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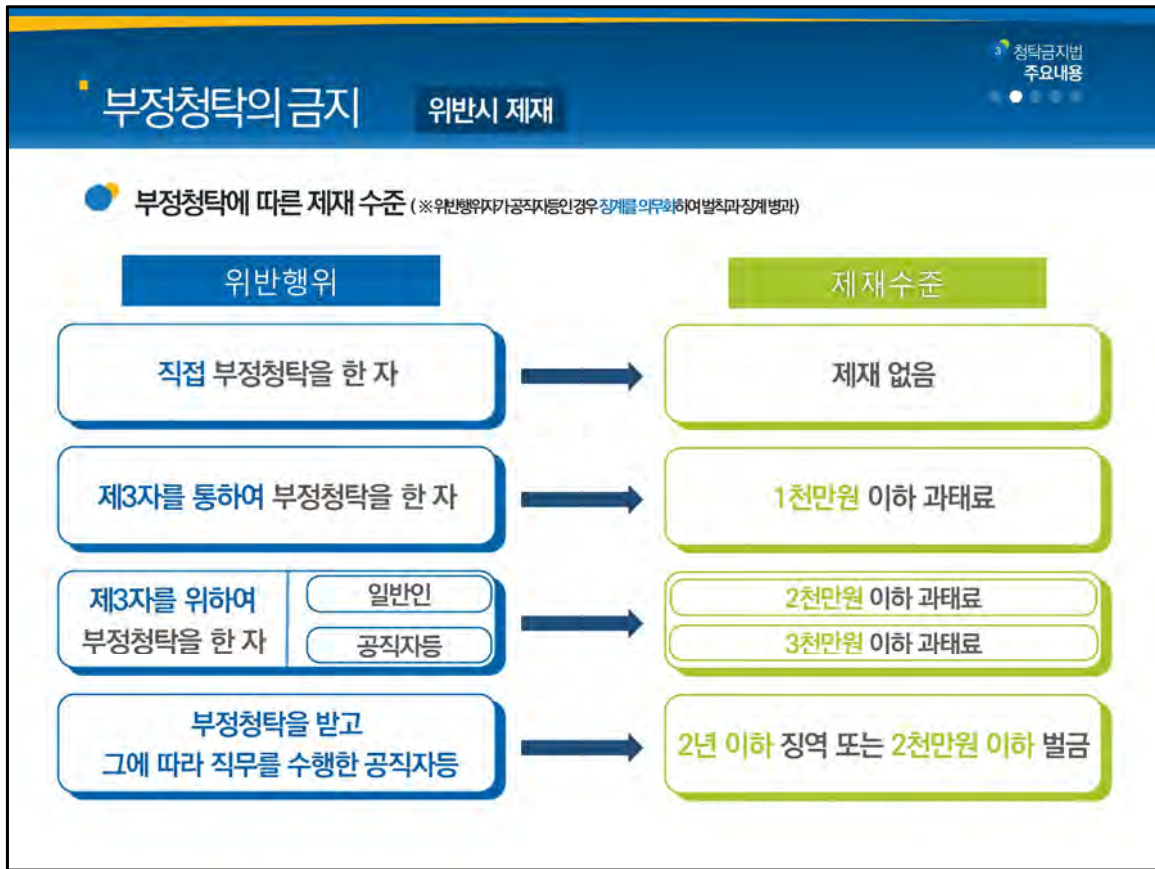
예외사유 자세히 보기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조치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2

복수의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 B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음. 이에 토지소유자 A의 친구 B는 다시 자신의 친구인 ○○군청 지방세 담당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3

법인 소속 직원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 건설회사(주) 소속 직원 A가 건축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C에게 청탁한 경우



양벌규정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 ● ● ●

-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면책

기업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 가액 산정 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장치로 기능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법인·단체 또는 개인

금품등 수수 금지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 ● ● ●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금품등 수수 금지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금품등 수수 금지 적용기준

● 공직자등과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공직자등 배우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100만원 이하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100만원 기준
대가성 여부 불문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등 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금품등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

● '금품등'의 정의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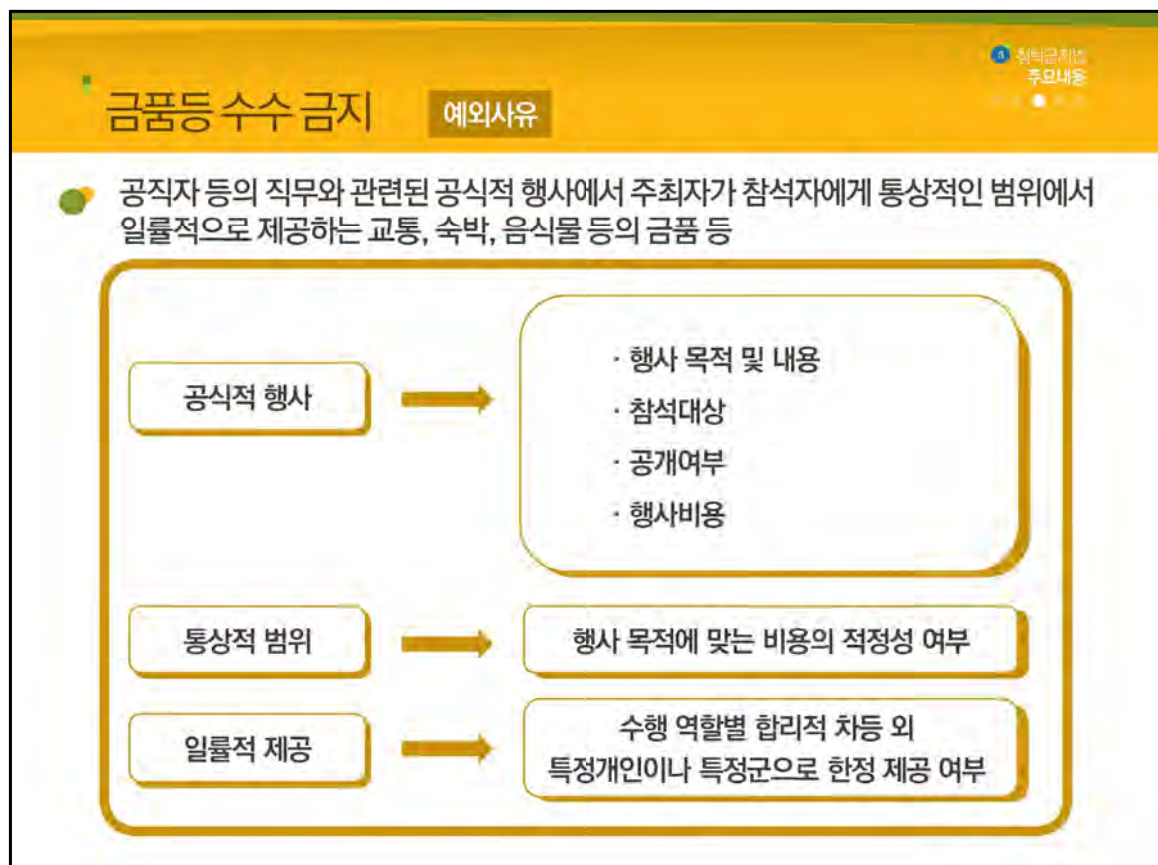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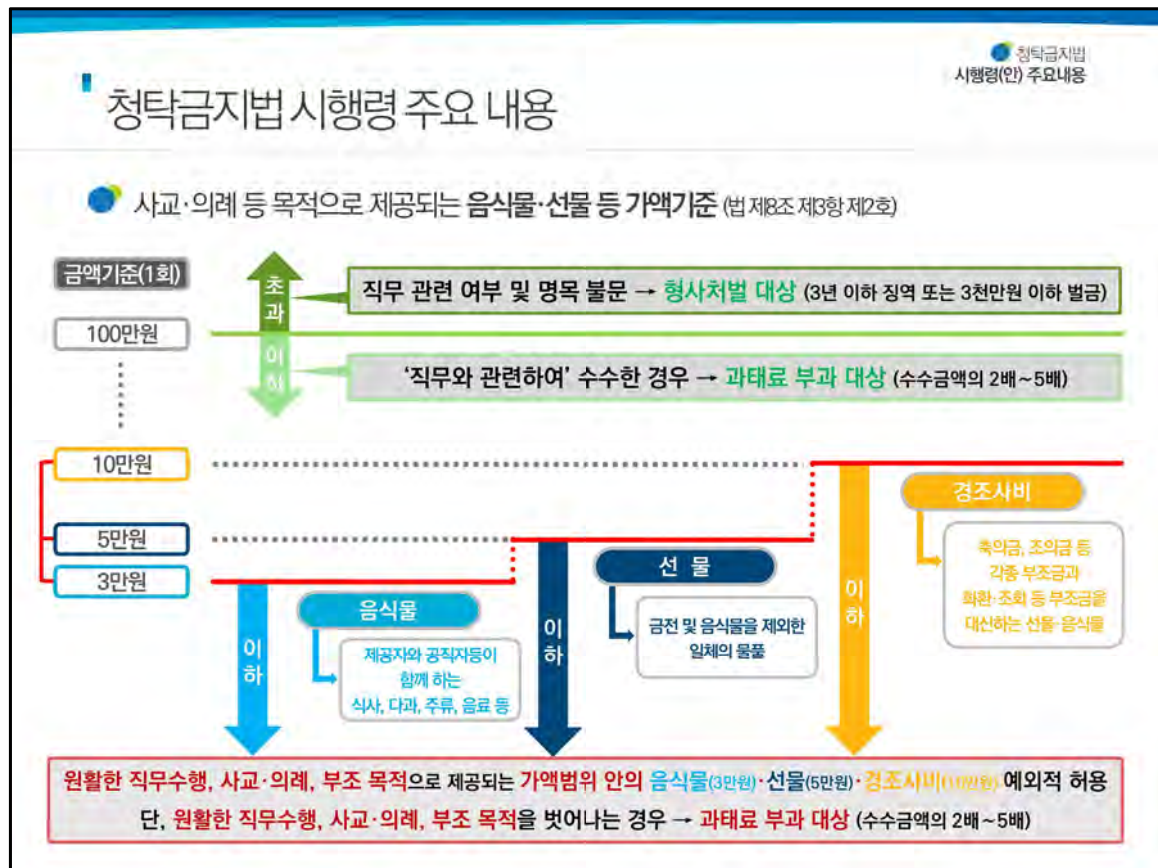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1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들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들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5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관련 사례

정당한 권원(무이자 소비대차, 사용대차, 가장매매 등 관련)

무이자 소비대차 사례
 공무원 A가 친분이 있는 사업자 B로부터 부동산을 소개 받는 자리에서 사업자 B로부터 1억원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하고 상당기간 후 1억원을 갚은 경우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금품등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에 대한 대응조치

공직자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등만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혹은 거부 의사 표시

+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 신고·인도는 감독기관·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소속기관장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해 **반환·인도 또는 거부 의사 표시 요구**

+

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조치사항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인도**한 경우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금품등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 의무화
→ 사전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징계처분 대상
-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 기준 금액 초과 사례금 수수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 지체 없이 반환
→ 신고 및 반환 조치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금품등 수수 금지

사례 1

회계연도 관련 사례

○○시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A가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
(※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음)

세무사 B 지방세 담당 공무원 A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 수수 금지

사례 2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1회 관련 사례

○○공공기관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A, 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하였음



◎ 양벌규정(청탁금지법 제24조)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면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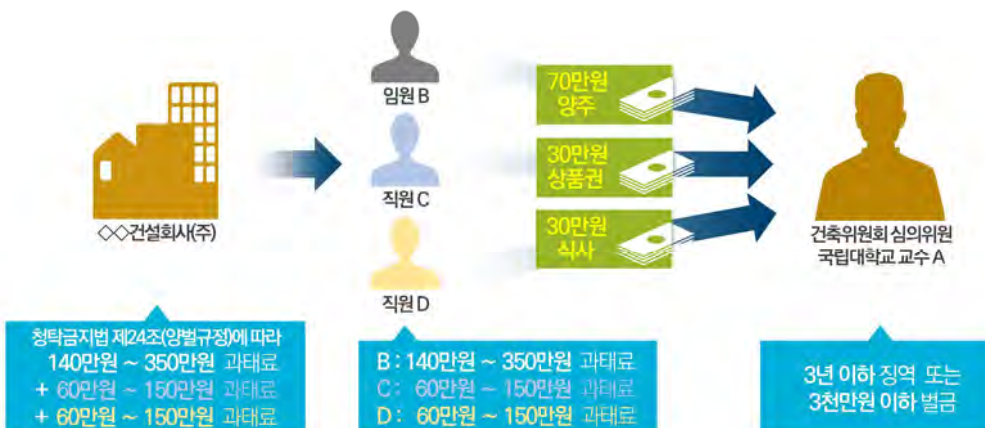
금품등 수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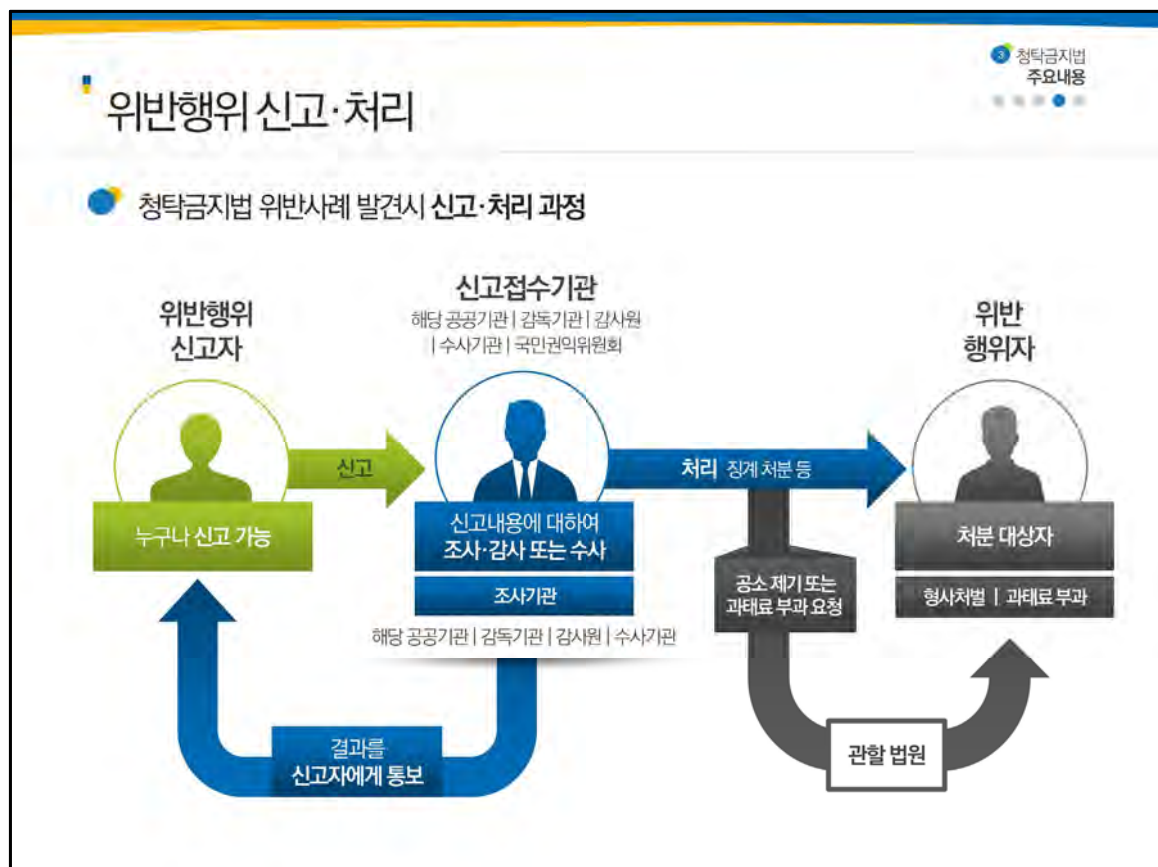
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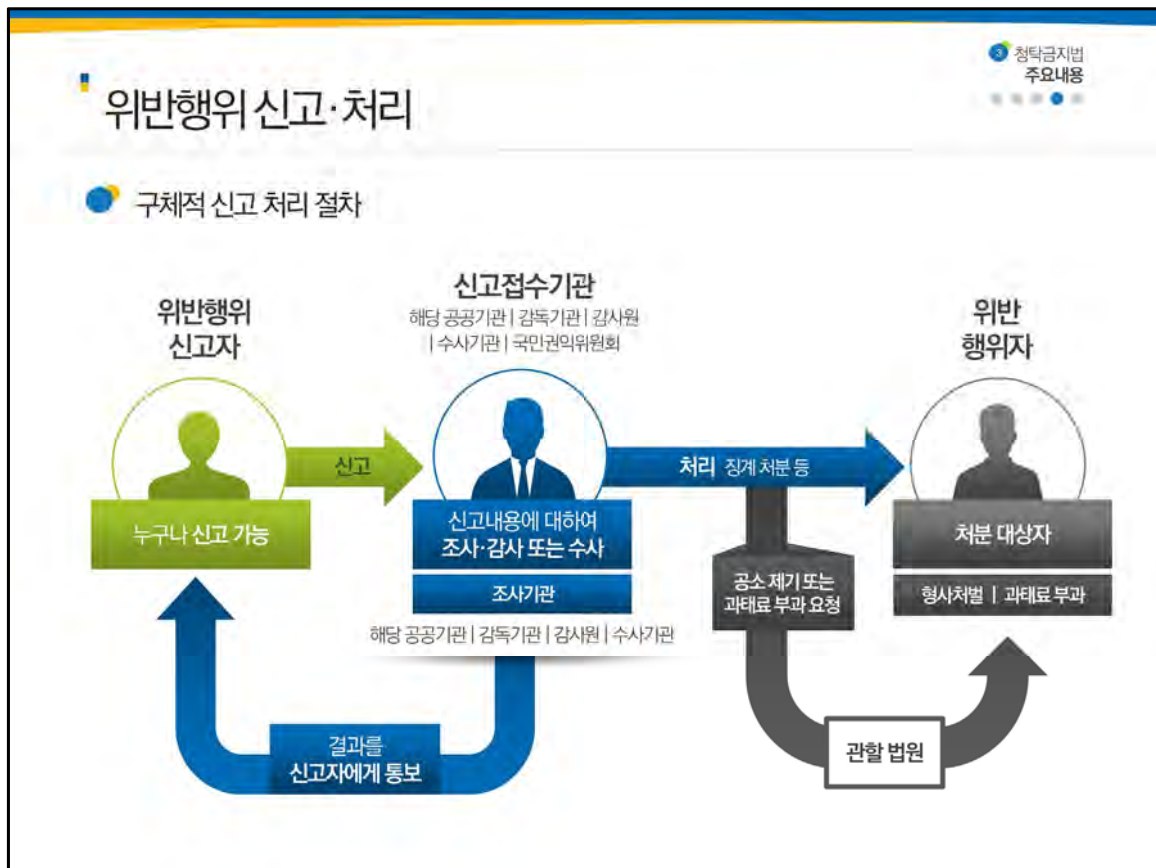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동일인 관련 사례

○○도 건축위원회에 ◇◇건설회사(주)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심의대상으로 상정되었음, 이에 ◇◇건설회사(주) 소속 임원 B는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소속 직원 C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속 직원 D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립대학교 교수 A에게 각각 제공 또는 접대를 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

청탁방지담당관이란?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도록 지정한 자

청탁방지담당관의 역할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협조 요청사항

① 기관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확정 및 공지, 통보 실시(~9.28)

②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소속, 산하 기관에 대한 전파 교육 실시
- 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 각종 자료 및 동영상 교육 자료(50분) 적극 활용

③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 준비

- 배포 예정인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준비
- 기관별 청탁등록시스템 마련, 개편 / 자문위원회 구성 등



누구도
부정청탁·금품수수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기전 **30초**,
받기전 **30초**.

30초의 생각이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2차시

1.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사례 발표자료
2. 교직원 관련 사례 발표자료
3. 언론사 관련 사례 발표자료



1.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사례 발표자료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1. '공직자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경우에는 '임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물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예컨대 수위,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자, 운전자 등)이나 계약직, 임시직 등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 1.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2. 국회의원은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나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부정청탁을 해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인가요?

A 2. 국회의원은 '공직자등'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3.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면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 □ 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甲이 행정심판과 무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의뢰인 A로부터 승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15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3. 甲이 받은 150만원 상당의 시계 선물은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공직자등)의 지위에 기하여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지위에 기하여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4. (1) ① A외국기업 대표 B가 A기업이 제조 가공한 식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甲(한국국적)에게 한국에서 30만원 상당의 식사집대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② A외국기업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는 외국 주재 특파원(한국국적) 乙에게 B가 외국에서 30만원 상당의 식사집대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직무관련성이 인정됨을 전제)?

(2) ○○국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甲이 외국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거나, 국제기구, 외국 대학 등에서 외부강의등을 하고 1시간에 500만원의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A 4. (1) 한국 공무원 甲은 한국에서 접대를 받았고, 특파원 乙은 외국에서 식사 접대를 받았으나 한국인이므로 속인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甲과 乙은 공직자등으로서 각각 직무와 관련하여 3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 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제21조).

또한 외국인 B가 외국에서 乙에게 식사접대를 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나, 한국에서 甲에게 식사접대를 한 것은 속지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2)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경우 3만원 범위 안에서 식사접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

또한 외교관에 대해서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나,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 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므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수수 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2]).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5. 지역주민 A가 지인인 ○○시청 건축과 과장 甲에게 관계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축허가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甲은 같은 과 소속 건축허가 담당 주무관 乙에게 증축허가를 하도록 지시하고, 乙이 이를 이행한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5.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甲은 건축과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乙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6. A회사 직원 B가 지역유지인 사업가 C를 통해 ○○시청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甲에게 관계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구청 사업허가 담당공무원 乙에게 위 부탁을 전달한 경우 甲, 乙,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A 6. 직원 B는 제3자(A회사)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 '제3자(A회사)를 위한' 부정청탁(제23조제2항)임과 동시에 '제3자(C)를 통한' 부정청탁(제23조제3항)인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이 아니라 제23조제2항이 적용

A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직원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사업가 C는 제3자(A)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甲은 담당공무원 乙의 업무처리 관련 결재권 또는 지휘감독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하지 않고, 제3자(A회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乙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乙은 거절·신고의무 등을 이행할 경우(제7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7. 건설업체 직원 A가 구청 인허가 담당자 甲에게 '민원을 빨리 처리해 달라', 또는 '서둘러 허가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런 부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7. 형식상 '서둘러 허가를 해 달라'는 부탁이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 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관계법령상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해줌)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제5조제2항제4호)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8.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甲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B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소유자 A의 친구 B는 다시 자신의 친구인 ○○군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乙을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甲, 乙,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A 8.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1호).

A는 제3자(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3항).

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 '제3자(A회사)를 위한' 부정청탁(제23조제2항)임과 동시에 '제3자(乙)를 통한' 부정청탁(제23조제3항)인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이 아니라 제23조제2항이 적용됨

乙은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甲은 거절·신고의무 등을 이행할 경우(제7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9. □□ 중앙부처 소속 국장 A의 자녀 B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국장 A는 자녀 B 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甲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甲이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가 합격한 경우 甲,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A 9. 공직자들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3호).

A는 제3자(B)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B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甲은 국장 A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 점수를 높게 주어 국장 A의 자녀 B를 채용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 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10. 아버지 A는 자신의 아들 B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병무청 홍보담당 간부 乙을 통하여 병역 판정검사장의 군의관 甲에게 아들 A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가 모르게 청탁한 경우 甲, 乙,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A 10.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11호).

A는 제3자(B)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 '제3자(B)를 위한' 부정청탁(제23조제2항)임과 동시에 '제3자(乙)를 통한' 부정청탁(제23조제3항)인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이 아니라 제23조제2항이 적용됨

B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乙은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甲이 거절·신고의무 등을 이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만(제7조제1항, 제2항), 부정청탁에 따라 4급 보충역 판정을 해 준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11. ○○파출소 순경 甲은 관할 지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운전 중이던 A에 대해 호흡기 측정기를 하자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8%로 측정되었는데, 최근 10년 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는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적발 사실을 제발 눈감아 달라고 부탁했고 甲이 이를 묵인한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11.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단속 결과에 따른 적발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13호).

A는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이해당사자로서,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甲은 A의 부정청탁에 따라 적발 사실을 묵인해 주었으므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12.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감면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B를 통해 구청의 영업정지 업무 담당자 C에게 영업정지 기간 감면 민원을 전달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A 12.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면해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2호).

B는 제3자(A)를 위하여 공직자등(구청 담당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제3자(국회의원)를 통하여 공직자등(구청 담당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되므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3항).

C는 거절·신고의무 등을 이행할 경우(제7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13. A건설(주) 소속 직원 B가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건축법령상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 甲에게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담당공무원 甲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건설(주) 소속 직원 C가 다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담당공무원 甲에게 한 경우 甲,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A 13. B와 C는 제3자(법인)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각각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A건설은 직원 B, C가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甲은 직원 B가 최초로 한 부정청탁에 대해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상 의무를 이행하였으나(제7조제1항), 직원 C로부터 거절의사를 표시한 부정청탁과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으므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제7조제2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제21조).

만약 부정청탁에 따라 건축허가를 해 줄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14. ○○도 턴키심사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A건설회사(주)의 설계가 심의대상으로 상정되었는데, 심의 1주일 전 A건설회사(주) 직원 B는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건축사 甲과 점심을 먹고 20만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오후 직원 C는 甲과 골프를 친 후 그린피 50만원을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 직원 D는 10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접대하고 택시비를 하라며 30만원을 甲에게 준 경우, 甲, A, B, C, D는 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A 14. 甲은 B, C, D로부터 금품등을 받았으나, 금품등의 출처는 A회사이므로, 동일인(A회사)으로부터 115만원 상당의 금품등(점심식사 10만원 + 그린피 25만원 + 저녁식사·술 50만원 + 택시비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음식물·주류 등의 접대·향응을 받은 경우 실제 접대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각자의 소요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또한, 甲이 B, C, D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행위는 같은 날 근접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시간적·계속성·근접성이 인정되어 1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甲은 A회사로부터 1회 115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B, C, D는 甲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각각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각자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가 부과된 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에는 실제 제공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
 ※ B, C, D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공동으로 제공행위를 하였다면, 「형법」상 공동정범(1회 100만원 초과 제공)으로서 모두 형사 처벌될 수 있음
 A회사는 B, C, D가 공동정범이 아닐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세 개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나(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경우 1개의 벌금 부과대상),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15. ○○중앙부처 甲국장은 해당 부처 산하 기관장 A(직무관련성 있음)로부터 2만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았습니다. 3만원을 넘지 않는 식사를 했지만, 식사 뒤 산하 기관장 A가 택시비로 하라면서 甲에게 20만원을 주었고, 甲이 이를 수수했을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산하기관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기관임)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A 15. 甲은 식사대접을 받은 뒤 바로 A로부터 택시비로 20만원을 받았으므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과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어 식사접대 행위와 택시비 제공행위를 1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甲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A로부터 1회 22만원(20만원+2만원)을 받았으므로,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에게 22만원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16.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 직원 A, B는 5만원씩 개인자금으로 각출하여 새로 부임한 ○○중앙부처 총괄과장 甲에게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16. 과장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하였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공기업 직원 A, B는 각 5만원씩(선물 5만원 범위 내)을 냈으나, A, B가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A, B는 각자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17. ○○시청 취득세 담당 공무원 甲은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A로부터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는데, 세무사 A는 공무원 甲이 근무하는 ○○시청과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은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A 17.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과 이를 제공한 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1항).

甲은 A로부터 회계연도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에게 회계연도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18. (1) ○○중앙부처 국장 A가 같은 부처 내 인사과장 甲에게 2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보내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2) ○○공공기관 팀장 A가 그동안 일하느라 수고한 팀원 甲, 乙, 丙과 함께 회식을 하고 식사 및 주류 비용 합계 20만원을 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18. (1)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A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8조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물을 받은 甲과 이를 제공한 A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2) 甲, 乙, 丙이 직무와 관련하여 A로부터 1인당 5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 乙, 丙,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19. A 중앙부처 장관 B가 예산을 총괄하는 甲중앙부처 장관 乙과 식사를 하면서 예산 관련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는 할 수 없나요?

A 19. 乙과 B가 예산 관련 업무협의를 하면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3만원 이하 식사접대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가능하나(제8조제3항제2호),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20. (1) ○○공공기관 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무관 A와 甲(둘은 입사 동기)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으로서 함께 술과 식사를 하였고, A가 식사대금 총 8만원을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2)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담당부서에서 일하는 사무관 乙과,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인 ○○시청에서 청렴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B는 공채시험 동기로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 중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B가 총 10만원을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20. (1)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A로부터 4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甲,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2) 乙은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식사 접대를 받은 乙과 이를 제공한 B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21. ○○지방검찰청에서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는 甲검사는 주말에 서울에서 사법연수원 동기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여 활동하고 있는 A변호사와 식사하였고, A변호사는 현재 甲검사가 근무하는 형사부 관련 사건은 없지만 甲검사가 전에 근무하던公安부의 사건을 수임한 적은 있었습니다. 식비 20만원 모두를 A변호사가 계산하면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A 21. 검사 甲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변호사 A로부터 10만원 상당 (20만원/2명)의 식사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여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 분할한 금액이 수수한 금품등에 해당 : 사안의 경우 총 음식접대비의 1/2로 산정

A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甲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하였으므로, 금품 등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22. (1) ○○공공기관 직원 甲이 담당했던 인허가 업무 완료 후, □□ 회사를 대리하여 인·허가 업무를 수행했던 ○○공공기관 출신의 A법무법인 변호사 B가 甲에게 식사(1인당 5만원)를 접대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2) 민원인 B가 ○○구청 직원 乙로부터 최종 민원회신결과를 받은 후 乙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표시로 편지와 함께 B가 직접 생산하는 5만원 상당의 꿀을 보내 온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A 22. (1) 공공기관의 인허가 업무 담당자인 甲과 같은 기관 출신의 B변호사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는 음식물 3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므로(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2) 최종 민원회신결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乙과 B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5만원 상당의 선물은 5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으나, 乙과 B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선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과 B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23.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소송을 대리하는 A법무법인 대표 B는, 소송 사건을 맡겨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소송 담당 과장 甲과 소속직원 乙, 丙을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접대한 경우, 음식물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요?(1인당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전제)

A 23. 식사초대 시 음식물 등 가액평가는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봄이 상당하며, 가액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여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 분할한 금액이 1인당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안의 경우 B, 甲, 乙, 丙이 함께 식사를 하였으므로, 총 음식접대비의 1/4을 1인당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24. ○○중앙부처 甲차관은 재력가 친구 A가 있었는데(직무관련성 없음 전제), A가 사업상 해외 출장을 갔다 오는 길에 공항 면세점에서 200만원(국내 판매시가 350만원)을 주고 와인 한 병을 사서 귀국한 후, 甲차관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A가 면세점에서 구입한 200만원 상당의 와인을 가져와서 함께 마셨습니다(식사 대금은 각자 결제). 이 경우 甲차관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A 24. 와인의 국내 판매시가가 350만원이라 하더라도, 면세점에서 200만원에 구입한 영수증이 있다면 와인 가액은 200만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甲은 100만원 상당의 와인을 제공받은 것이나, 甲과 A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甲과 A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실제구매가격(200만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甲은 1회 175만원 상당의 와인 접대를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공직자등에게 175만원 상당의 와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25.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받은 경우 어떤 가액기준이 적용되는지요?

A 25. 동일인으로부터 부조금, 선물, 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각각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되, 이 경우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의 상한액은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26. 건설 관련 중앙부처 국장인 甲은 주말에 부실건설사로 의심되어 조사를 하고 있는 A건설회사의 임원 B, C, D와 함께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에서 법인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고 각자 비용을 5만원씩 나누어 냈지만, 위 골프장의 회원이 아닌 일반인의 주말 골프비용은 25만원 정도인 경우 甲, A, B, C, D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A 26. 골프접대의 가액은 그린피의 시가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20만원 상당(골프비용 시가 25만원 - 甲이 지출한 비용 5만원)의 골프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B, C, D는 공무원 甲에게 2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하였으므로, 각각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A건설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B, C, D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27. A업체의 부장 B와 팀장 C는 공공기관의 직원 3명과 오찬을 갖게 되었는데(직무관련성이 있음을 전제), 1인당 5만5천원이 나왔습니다. B부장은 음식물접대 허용 상한액이 3만원이므로 15만원을 결재했으며, 1인당 5만5천원 중 3만원을 넘는 2만5천원 부분은 오찬 참석자 각자가 더치페이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A 27. 3만원 초과 부분은 각자 더치페이 했으므로,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인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제8조제3항제2호).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28. A회사에서 공무원 甲의 배우자 乙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어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나요? 직원채용 과정에서 응시생의 배우자가 공무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요?

A 28. 공무원 甲의 배우자 乙에 대한 취업제공이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방편이 아니라, 회사 채용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정당하게 채용한 것이라면 채용과정에서 응시생의 배우자가 공무원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 甲의 직무가 A회사와 관련되고, 공무원 甲의 배우자 乙에 대한 취업제공이 공무원 甲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방편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취업제공은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되어 제8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등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29. (1) 45,000원 상당의 선물을 서울에서 서울로 보낸 경우에는 49,000원 (택배비 4,000원), 같은 선물을 서울에서 제주도로 보낸 경우에는 51,500원 (택배비 6,500원)인데, 모두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에 해당하나요?

(2) 2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접대하는 경우, 부가세(10%)를 포함하면 30,800원, 부가세를 제외하면 28,000원인데, 이러한 경우 음식물 가액평가 시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A 29. (1) 택배비는 선물 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

(2) 부가가치세는 음식물 가격에 포함되어 표시되므로, 음식물 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30. 공기업 영업본부 직원 乙은, 영업본부장 甲으로부터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는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가서 甲과 함께 있던 계약업체 직원 A와 함께 식사를 하고 A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했는데, 乙은 A가 누구인지 몰랐고 영업본부장 甲이 식사비를 계산한 것으로 안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A 30. 乙은 계약업체 직원 A로부터 식사를 접대 받는 데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계약업체 직원 A로부터 40만원 상당의 식사(甲이 초대한 乙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 포함)를 접대 받았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공직자등이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공직자등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 5294 판결)

A는 직무와 관련하여 영업본부장 甲에게 4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31. ○○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 甲이 사회복지사 A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 받았는데, 일주일 후 공무원 甲이 사회복지사 A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31. 공무원 甲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사 A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으므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공무원 甲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하였으므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32. ○○시청 과장 A는 평소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는 등 친분이 있는 감사과 직원 甲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A가 1차 식사비용 총 10만원을 계산하자, 甲이 1차는 A가 샀으니 2차는 자기가 사겠다고 하면서 바로 같은 동네에 있는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고 甲이 2차 술값 총 10만원을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32.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甲과 A의 상호 접대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A가 1차를 냈으니 甲이 2차를 내기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술과 식사를 하고 더치페이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일 甲이 1차로 3만원 상당, A가 2차로 15만원 상당을 제공하였다면, 甲은 A로부터 12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33. ○○시 시장 甲의 초등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A는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상태인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 甲의 배우자 乙이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400만원의 후원금을 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甲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1) 시장 甲의 배우자 乙이 건설업자 A로부터 후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甲이 몰랐을 경우
- (2) 시장 甲의 배우자 乙이 건설업자 A로부터 후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甲이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3) 시장 甲의 배우자 乙이 건설업자 A로부터 후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甲이 알고 신고한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A 33. (1) 甲은 자신의 배우자 乙이 甲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A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없으며(제9조 제1항제2호),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甲은 자신의 배우자 乙이 甲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A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고, 乙이 A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400만원을 받았으므로, 甲은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9조제1항제2호, 제22조제1항제2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3) 甲은 자신의 배우자 乙이 甲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A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9조제1항제2호,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34. 지인인 공무원 甲에게 오랫동안 일과 관계없이 추석 선물을 계속 보내 왔는데 앞으로는 못 보내나요? 공무원 甲의 승진 선물로 난을 보내거나 결혼식 화환을 보내는 것은 괜찮은가요?

A 34. 공무원 甲과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탁 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등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일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혼식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므로, 사교·의례 등 목적의 10만원 이하 화환일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35.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시 피감기관 국장 A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乙에게 점심을 사거나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3만원 이하이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것인가요?

A 35.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는 점, 국장 A는 해당 국회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 소속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설사 A가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36. ○○지방자치단체의 A팀장은 자신의 직속 상관인 甲국장과 저녁자리를 함께하고 자신의 인사를 잘 봐달라며 식사비용 합계 5만원을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36.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A로부터 2만5천원(5만원/2)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았고, 이는 음식물 3만원 가액 범위 내이지만, 자신의 인사를 잘 봐달라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3만원 가액 범위 내의 음식물 접대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A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을 벗어난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37. 공무원은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면 여러 번 받아도 되나요?

A 37.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5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것이며(제8조제3항제2호),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액기준 내의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38.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는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받은 경우 가액을 합산하고 허용가액을 5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이 45,000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으면서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함께 5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것인가요?

A 38. 45,000원 상당의 식사대접과 동시에 5,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경우, 음식물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여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 음식물 가액은 3만원 이하, 선물 가액은 5만원 이하 기준을 각 충족하면서 동시에 합산한 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39. (1) 공무원 甲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사촌 A가 조의금으로 50만 원을 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2)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 乙이 재력가인 11촌 아저씨 B로부터 승진 축하 기념으로 12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경우(甲과 A는 직무관련성 없음)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A 39. (1) 사촌 A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A가 조의금으로 낸 50만원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8조제3항제4호).

따라서 甲과 A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1촌 아저씨 B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120만원 상당의 양복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합니다(제8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乙과 B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乙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이상,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B는 공직자등인 乙에게 120만원 상당의 양복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40. A회사가 신제품 론칭 행사를 호텔에서 개최하면서 관련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 30여명을 초대하여 1인당 10만원 상당의 호텔 식사를 제공하고 7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40. 행사 참석 대상이 관련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 30여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행사를 호텔에서 개최하면서 호텔 식사를 제공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인당 10만원 상당의 호텔 식사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음).

선물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음), 7만원 상당의 선물은 가액범위를 초과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41. 결혼식 혼주가 하객으로 참석한 직무관련 공무원 甲을 포함하여 모든 하객들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41. 모든 하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동일하게 제공했다는 점, 관혼상제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인 점,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신뢰를 해하지 않을 정도의 식사 제공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제8조제3항제8호).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42. (1) 개인사업을 하는 A(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전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공무원 甲에게 결혼 선물로 11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사준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나요?

(2) ○○지방자치단체 지적과에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乙은 기존 직무와 관련이 없는 □□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게 되었는데, 평소 지적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 B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샀다면서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A 42. (1) 공무원 甲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및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공무원 甲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2) 공무원 乙은 B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및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제21조).

B는 공무원 乙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43. 공직자 甲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 주었을 경우 공직자는 면책되나요?

A 43. 甲의 경우 두 달 정도 돈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지체 없이 신고,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 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 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신고, 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15조제3항).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44.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甲이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비로소 유관기관 임원 A가 경조사비 200만원을 낸 것을 확인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44.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그러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한 공직자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甲은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비로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확인한 즉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반환의무를 이행할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45.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가액 한도 5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A 45.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바,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면 해당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5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 부분만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사례

Q 46. ○○공공기관 직원 甲은 □□연수원에서 외환업무과정(5일) 중 2일에 걸쳐 강의요청(1일차 외환관계법규 2시간, 2일차 외환조사사례 2시간)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A 46. 강의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를 경우 각 1회의 강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일차 강의와 2일차 강의는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관계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하므로, 공공기관 직원 甲은 1회의 강의 당 30만원(20만원 + 10만원(20만원 × 1/2))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1일차 외환관계법규 강의와 관련하여 30만원, 2일차 외환조사 사례 강의와 관련하여 30만원, 즉 총 60만원을 한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직원 관련 사례 발표자료

교직원 관련 사례

Q 1. '공직자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경우에는 '임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물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예컨대 수위,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자, 운전자 등)이나 계약직, 임시직 등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 1.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원 관련 사례

Q 2. 대학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외부강의 사례금 등에 있어서 대학교수와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상의 적용대상인가요?

A 2. 시간강사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직원 관련 사례

Q 3. ㉮은 사기업 대표이사이면서 학교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함을 전제) 거래처 대표이사 A와 골프를 치면서 2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A 3. 사기업 대표이사로서 2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을 뿐,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원 관련 사례

- Q 4.** (1) A회사(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위촉된 국립대 교수甲(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A회사가 지급하는 월급도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인가요?
- (2) A회사가 '사외이사 보수 및 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해외연수비 및 휴양시설 이용비 명목으로 甲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인가요?
- (3) 청탁금지법상 甲에게 선물은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교직원 관련 사례

- A 4.** (1) 월급은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에서 지급받는 것으로서,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甲이 민간기업인 A회사의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대학교수)를 가지는 이상, 5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국립대 교수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주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제8조제3항제2호), 이러한 목적을 벗어나거나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교직원 관련 사례

Q 5. ○○사립대 의대 교수이면서 같은 대학교의 협력병원(○○사립대학교와 별도 법인) 소속 의사인 甲이 며칠 전에 치료해 준 환자 A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5. 환자 치료 관련 甲의 금품 수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협력병원 소속 의사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원 관련 사례

Q 6.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나요?

A 6. 청탁금지법상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금지되나(제5조제1항),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입법정책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관련 사례

Q 7. '법령을 위반하여' 행위를 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부정한 청탁이 성립하는 것이라면, 공직자등에게 어떠한 행위를 부탁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량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또는 '법대로'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A 7.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 관련 사례

Q 8. ○외국인학교 교사 乙은, 학부형 A로부터 아들 B(외국에서 6개월 거주)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같은 학교 입학처장 甲에게 B를 입학시켜줄 것을 부탁하였고, 甲이 B를 입학시킨 경우 甲, 乙,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교직원 관련 사례

A 8. 외국인학교 입학 등 업무는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외국 거주 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는 제3자(B)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로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2항). B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乙은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甲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을 하였으므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교직원 관련 사례

Q 9.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乙를 통해 계약 담당 직원 甲에게 공사를 분할하여 공사금액을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여 건설사업자 A가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된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교직원 관련 사례

A 9.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공사 및 금액을 분할하여 특정인을 수의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5조제1항제7호).

A는 제3자(乙)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3항).

乙은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甲은 乙의 부정청탁에 따라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교직원 관련 사례

Q 10.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乙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甲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교직원 관련 사례

A 10. 보조금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8호).

A는 제3자(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3항).

乙은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甲은 乙의 부정청탁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아닌 A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교직원 관련 사례

Q 11. A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甲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무과장 甲은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甲,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교직원 관련 사례

A 11. 입원순서를 접수 순서대로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먼저 입원시키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9호).

A는 제3자(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3항).

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甲은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해당 병원에 대기자 A가 우선하여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교직원 관련 사례

Q 12.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B의 아버지 A는 자녀 B가 모르게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甲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경우 甲,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교직원 관련 사례

A 12. 학교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10호). A는 제3자(B)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B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甲은 A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 B의 성적을 올려주었으므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교직원 관련 사례

Q 13.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A 13.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는 점, 소속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원 관련 사례

Q 14.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중학교 1반 학생 30명의 학부모들이 각 2만원씩 각출하여 60만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 甲에게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교직원 관련 사례

A 14. 교사 甲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60만원 상당의 선물은 가액한도 5만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甲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학부모들은 1인당 2만원씩(선물 5만원 범위 내)을 냈으나,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학부모들이 모두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학부모들 각자는 교사 甲에게 제공한 금액인 6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직원 관련 사례

Q 15. 제약업체에 다니는 A, 초등학교 교사 甲,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乙은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A가 식사대금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15. 甲과 乙은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각각 20만원 상당(60만원/3명)의 식사를 접대 받았으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원 관련 사례

Q 16. (1) 친한 교수들 간, 같은 전공 교수들 간, 교무처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평교수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요?

(2) 특정 과목 수업을 하는 선생님과 수업을 듣는 학생(학부모) 간, 학급 담임 교사와 해당 학급 학생(학부모) 간,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요?

교직원 관련 사례

A 16. (1)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친한 교수들, 같은 전공 교수들 사이에서는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무처장을 비롯한 보직교사와 평교수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과목 선생님, 담임교사, 지도교수와 학생(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타 학교로 전출을 갔거나, 학생이 졸업을 한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직원 관련 사례

Q 17. ○○사립초등학교에서 과학실에 비치할 교구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과학교구상 A가 해당 초등학교 과학교사 甲에게 '아이들 가르치느라 수고가 많다'며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사 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교직원 관련 사례

A 17. 사립초등학교 과학교사가 교구 구매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으나, 과학교사는 교구사양이나 제품군을 지정하는 등 업무처리 방향 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 교구상은 과학교사의 영향력 행사에 따라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甲과 A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만원 상당의 선물은 선물 5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으나, 甲과 A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선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교직원 관련 사례

Q 18. 대학원생 A는 박사학위 논문 심사 후 한정식 집에서 논문심사 교수들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접대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교직원 관련 사례

A 18. 논문심사 교수들은 논문에 대한 심사,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며, 논문심사 통과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대학원생은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수들과 A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7만원 상당의 식사는 음식물 3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 심사 통과를 부탁하는 취지로 식사를 산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음식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수들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교직원 관련 사례

Q 19.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받은 경우 어떤 가액기준이 적용되는지요?

A 19. 동일인으로부터 부조금, 선물, 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각각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되, 이 경우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의 상한액은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관련 사례

Q 20. 공무원에게 골프접대는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A 20. 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골프접대는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원과 전혀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이라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골프접대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직원 관련 사례

Q 21. (1) 45,000원 상당의 선물을 서울에서 서울로 보낸 경우에는 49,000원 (택배비 4,000원), 같은 선물을 서울에서 제주도로 보낸 경우에는 51,500원 (택배비 6,500원)인데, 모두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에 해당하나요?

(2) 2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접대하는 경우, 부가세(10%)를 포함하면 30,800원, 부가세를 제외하면 28,000원인데, 이러한 경우 음식물 가액평가 시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A 21. (1) 택배비는 선물 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

(2) 부가가치세는 음식물 가격에 포함되어 표시되므로, 음식물 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직원 관련 사례

Q 22. ○○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 甲이 사회복지사 A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 받았는데, 일주일 후 공무원 甲이 사회복지사 A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22. 공무원 甲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사 A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으므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공무원 甲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하였으므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교직원 관련 사례

Q 23. ○○시청 과장 A는 평소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는 등 친분이 있는 감사과 직원 甲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A가 1차 식사비용 총 10만원을 계산하자, 甲이 1차는 A가 샀으니 2차는 자기가 사겠다고 하면서 바로 같은 동네에 있는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고 甲이 2차 술값 총 10만원을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23.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甲과 A의 상호 접대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A가 1차를 냈으니 甲이 2차를 내기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술과 식사를 하고 더치페이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일 甲이 1차로 3만원 상당, A가 2차로 15만원 상당을 제공하였다면, 甲은 A로부터 12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교직원 관련 사례

Q 24.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되어 온 선물은 받아도 되는지요?

A 24. 만일,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거나 선물의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신고·반환·거부의 의사표시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반환이나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교직원 관련 사례

Q 25. (1) A할머니가 평생 노점상을 하며 모은 5억원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甲사립대학교에 발전기금으로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2) 乙사립대학교 대학원 CEO 최고위자 과정에 재학 중인 기업체 대표 B가 학교의 학술연구 진흥을 위해 써달라며 학교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3) C는 매년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 이사장 丙에게 직접 학교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500만원을 기부하였고, 실제로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교직원 관련 사례

A 25. (1) A할머니가 기부를 하게 된 경위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상황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A할머니가 제공한 발전기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제8조제3항제8호), A와 甲사립대학교의 발전기금 업무담당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B가 기부를 하게 된 경위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상황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B가 제공한 발전기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제8조제3항제8호), B와 乙사립대학교의 발전기금 업무담당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C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중학교 이사장 丙에게 500만원을 주는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제8조제1항), C가 제공한 학교발전기금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8호). 따라서, C와 중학교 이사장 丙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원 관련 사례

Q 26. 사립학교 재단이사 甲의 부인 乙이 해당학교 입학원하는 학부모 A로부터 150만원짜리 가방을 선물로 받은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26.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제8조제4항)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의 배우자(乙)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공직자등인 甲은 자신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제9조제1항 제2호).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22조제1항제2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15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하였으므로, 甲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았는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교직원 관련 사례

Q 27. 대학원생 A는 자신의 지도교수 甲의 배우자 乙의 생일날에 乙에게 전달 하라며 7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甲에게 준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27. 선물의 명목이 甲의 배우자 乙에 대한 선물이라 하더라도, 甲이 직접 선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甲이 배우자 乙에게 선물을 전달 했는지 여부는 사후적 정황에 불과합니다.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제자인 대학원생 A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제8조 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받았으므로 선물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에게 7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으므로, 선물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乙은 선물을 직접 받지 않았고, 설사 乙이 A로부터 선물을 직접 받았다 하더라도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원 관련 사례

Q 28.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등 가액한도 기준과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상 기준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을 따라야 하나요?

A 28. 청탁금지법이 기존의 다른 법령(예를 들어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직원 관련 사례

Q 29. 공무원등은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면 여러 번 받아도 되나요?

A 29.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5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것이며(제8조제3항제2호),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액기준 내의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교직원 관련 사례

Q 30.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는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받은 경우 가액을 합산하고 허용가액을 5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이 45,000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으면서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계 5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것인가요?

A 30. 45,000원 상당의 식사대접과 동시에 5,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경우, 음식물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여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 음식물 가액은 3만원 이하, 선물 가액은 5만원 이하 기준을 각 충족하면서 동시에 합산한 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교직원 관련 사례

Q 31. 고등학교 교사 甲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A로부터 2만원짜리 카카오톡 음료쿠폰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31. 교사 甲이 담임을 맡고 있어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 A의 음료쿠폰 선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A가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교직원 관련 사례

Q 32. 중학교 교사 甲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 B의 부모 A가 찾아와 상담을 하다가 식사시간이 되어 학생 B의 부모 A가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산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32. 교사 甲이 담임을 맡고 있어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 A의 식사 접대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A가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 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교직원 관련 사례

Q 33. 사립학교인 ○○고등학교 진학지도교사인 甲은 지방에 있는 2년제 □□ 대학의 입시설명회에 참석하고 대학의 입학처 직원인 A로부터 50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33. 선물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인 경우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가액범위를 초과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교직원 관련 사례

Q 34. A제약회사가 고혈압 치료제인 신약을 개발하여 판매하면서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국립대학병원 의사 甲이 제품 설명회에 참석하여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34. 「의료법」 상 제품설명회에서 10만원 이하 식음료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甲이 제공받은 10만원 상당의 음식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8조제3항제8호)

교직원 관련 사례

Q 35.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甲이 자신의 반 학생의 학부모 A로부터 '숙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혼내지 말고 칭찬해 달라.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2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35.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12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교직원 관련 사례

Q 36. 학급회장 어머니 A가 담임 선생님 甲에게 수학여행을 가서 학급 아이들과 맛있는 것을 사 드시라고 하면서 50만원을 전달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36.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50만원을 받았으므로,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공직자등인 교사에게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교직원 관련 사례

Q 37. (1) 유치원 교사 甲이 학부모 A로부터 '자녀를 잘 돌봐 달라'는 대가로 30만원의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2) 추석 명절에 사립학교 교사 甲이 학부모 A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구두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3) ○○초등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아버지인 A는 1학년 1반 담임선생님 甲에게 좋은 일에 사용하라고 하며 다른 동료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50만원을 주었는데, 교사 甲은 5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불우이웃 성금으로 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교직원 관련 사례

A 37. (1) 유치원 교사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3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甲에게 3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하였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2) 교사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甲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였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3) 교사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50만원을 받았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甲에게 50만원을 제공하였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교직원 관련 사례

Q 38.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유치원 운전기사 甲에게 학부모 A가 선물로 들어온 시가 5만원이 넘는 홍삼팩 1박스를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38.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A는 공직자등에게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교직원 관련 사례

Q 39. 중학교 급식조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甲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납품 입찰을 하려는 친구 A와 20만원 상당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친구 A가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39.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납품입찰을 하려는 A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공직자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접대를 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교직원 관련 사례

Q 40. 공립중학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 대표 A는 추석을 맞이하여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었으나 무기계약근로자 甲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거절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40.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중학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 대표 A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으므로,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공직자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업체는 양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직원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선물을 거절한 나머지 직원들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원 관련 사례

Q 41. 학부모 A는 甲교사가 정년퇴직하기 전 성대한 송별회를 하여 1인당 7만원 상당의 식비가 나온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41.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7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학부모A는 공직자등에게 7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교직원 관련 사례

Q 42. 교육 관련 사업 부문이 있는 기업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A씨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고등학교 동문 7명과 송년회를 했습니다. A씨를 포함한 7명은 공직과 전혀 관계없는 직업이고 1명만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A씨는 술을 마시다가 교직원 친구 甲에게 "앞으로 우리 회사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조언이 필요하니 잘 봐 달라"고 하면서, 그 날 술자리는 A씨가 계산했는데 술값은 80만원인 경우 甲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교직원 관련 사례

A 42.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ㅁ'은 직무와 관련하여 A로부터 10만원(80만원/8명)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공직자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A가 재직 중인 기업은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직원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교직원 관련 사례

Q 43. 원어민 기간제교사인 외국인 A는 공립초등학교 교장 ㅁ에게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는 말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43.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ㅁ은 직무와 관련하여 원어민교사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공직자등에게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교직원 관련 사례

Q 44. ○○공공기관 직원 甲은 □□연수원에서 외환업무과정(5일) 중 2일에 걸쳐 강의요청(1일차 외환관계법규 2시간, 2일차 외환조사사례 2시간)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A 44. 강의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를 경우 각 1회의 강의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1일차 강의와 2일차 강의는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관계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하므로, 공공기관
직원 甲은 1회의 강의 당 30만원(20만원 + 10만원(20만원 × 1/2))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1일차 외환관계법규 강의와 관련하여 30만원, 2일차 외환조사
사례 강의와 관련하여 30만원, 즉 총 60만원을 한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직원 관련 사례

Q 45. (1) 국내 사립대학 교수가 외국대학,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2) 국적은 한국이지만 해외 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국내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3)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하는 국제심포지엄에서 세계적 수준의 국내 대학
교수는 100만원, 미국 대학 교수는 5000불을 지급해야 하나요?

교직원 관련 사례

A 45. (1) 국내 사립대학 교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며(제2조제2항다목),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게 됩니다(시행령 [별표 2] 1호라목).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주체는 공직자등인바(제10조제1항), 외국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대학 소속 교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미국 대학 교수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주체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대학 교수의 경우 해당 국제 심포지엄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초청받은 것이어야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제10조제1항).



3. 언론사 관련 사례 발표자료

언론사 관련 사례

Q1. '공직자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경우에는 '임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물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예컨대 수위,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자, 운전자 등)이나 계약직, 임시직 등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1.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언론사 관련 사례

Q2. 언론사 비등기이사, 프리랜서 기자, 언론보도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2. (1) 비등기이사 : 언론사 비등기이사는 언론사 임원(이사, 감사)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기자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언론보도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직원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관련 사례

Q3. 증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리서치자료 등을 발간(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은 발행 안함)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신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권사도 청탁금지법상 '언론사' 해당하나요?

A3. 증권사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발행하는 '리서치자료' 등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정보간행물'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증권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언론사 관련 사례

Q4. ○○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협회')는 케이블TV방송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며, '□□ 케이블'이라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기도 합니다. 협회의 대표자와 임직원 전체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A4. '□□ 케이블' 발행 부서 책임자와 그 소속직원만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언론사 관련 사례

Q5. (1)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제4호에 따라 법인단체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공무수행사인인가요?
 (3)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 수탁된 공무 외에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A5. (1) ①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②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③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④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인 수임수탁 업무 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제11조제1항제2호).
 (3)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제11조제1항).

언론사 관련 사례

Q6.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나요?

A6. 청탁금지법상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금지되나(제5조제1항),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기회보장 등을 위해 입법정책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관련 사례

Q7. '법령을 위반하여' 행위를 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부정한 청탁이 성립하는 것이라면, 공직자등에게 어떠한 행위를 부탁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량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또는 '법대로'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A7.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 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 관련 사례

Q8. (1) 지상파 방송사 보도국장인 甲은 대기업인 A주식회사 홍보팀장 B로부터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 회사 사주의 노조탄압행위와 관련된 내용의 방송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결국 그러한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2) 공무원이 친분을 이용해 기자에게 특정 기사를 게재하지 말 것을 부탁하거나 취재한 기사를 삭제하여 달라고 부탁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3) 언론사에 홍보성 기사 또는 자사 제품에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8. 방송을 막아달라는 요구내용, 특정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 달라고 삭제해 달라는 요구내용,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요구내용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언론사 관련 사례

Q9. 제5조제2항제7호의 '사회상규'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A9.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으므로, 적용과정에서 불명확성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언론사 관련 사례

Q10.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A10.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는 점, 소속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언론사 관련 사례

Q11. (1) ○○언론사 편집국장 甲은 포럼에 참석한 후, 포럼회원 3명과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식사한 회원 중 ○○언론사의 출입처인 □□ 공공기관의 직원 A가 저녁식사비 총 20만원을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2) 방송국 PD 甲은 대학동기인 연예기획사 대표 A와 술을 마셨는데, 술자리에서 연애가 소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소속 연예인의 출연에 관한 청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술값 30만원은 A가 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3) 일간지 연애부 기자 甲은 명절을 맞아 고향에 내려간 김에 고향 친구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와 식사를 하였습니다. A가 "오랜만에 고향에 왔으니 한 톨 쏘겠다"며 식사비 10만원을 낸 경우도 처벌대상인가요?

A11. (1) 언론사 편집국장 甲과 출입처인 공공기관 직원 A간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는 음식물 3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므로(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2) 방송국 PD 甲과 연예기획사 대표 A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1인당 15만원 상당의 주류는 음식물 3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므로(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가 고향친구인 연애부 기자 甲에게 식사를 사는 것이 甲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과 A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언론사 관련 사례

Q12. (1) ○○감독원 은행감독국 직원 A가 ○○감독원에 출입한 적이 없는 언론사 경제부 기자 甲과 10만원(1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하고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2) ○○감독원 공보실 직원 B가 과거 ○○감독원에 출입하였으나 현재는 ○○감독원에 출입하지 않는 언론사 사회부 기자 乙과 10만원 상당(1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하고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12. (1) 경제부 기자 甲은 ○○감독원 은행감독국 직원 A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는 음식물 3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므로(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2) 과거 ○○감독원 출입 기자였던 乙기자와 ○○감독원 공보실 직원 B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는 음식물 3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므로(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乙과 B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언론사 관련 사례

Q13.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받은 경우 어떤
가액기준이 적용되는지요?

A13. 동일인으로부터 부조금, 선물, 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각각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되, 이 경우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의 상한액은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관련 사례

Q14. 공무원에게 골프접대는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A14. 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골프접대는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원과 전혀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이라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골프접대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언론사 관련 사례

Q 15. (1) 45,000원 상당의 선물을 서울에서 서울로 보낸 경우에는 49,000원 (택배비 4,000원), 같은 선물을 서울에서 제주도로 보낸 경우에는 51,500원 (택배비 6,500원)인데, 모두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에 해당하나요?

(2) 2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접대하는 경우, 부가세(10%)를 포함하면 30,800원, 부가세를 제외하면 28,000원인데, 이러한 경우 음식물 가액평가 시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A 15. (1) 택배비는 선물 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

(2) 부가가치세는 음식물 가격에 포함되어 표시되므로, 음식물 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사 관련 사례

Q16. ○○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 甲이 사회복지사 A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 받았는데, 일주일 후 공무원 甲이 사회복지사 A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16. 공무원 甲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사 A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으므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공무원 甲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하였으므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언론사 관련 사례

Q17. ○○시청 과장 A는 평소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는 등 친분이 있는 감사과 직원 甲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A가 1차 식사비용 총 10만원을 계산하자, 甲이 1차는 A가 샀으니 2차는 자기가 사겠다고 하면서 바로 같은 동네에 있는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고 甲이 2차 술값 총 10만원을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17.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甲과 A의 상호 접대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A가 1차를 냈으니 甲이 2차를 내기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술과 식사를 하고 더치페이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일 甲이 1차로 3만원 상당, A가 2차로 15만원 상당을 제공하였다면, 甲은 A로부터 12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언론사 관련 사례

Q18.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되어온 선물은 받아도 되는지요?

A18. 만일,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거나 선물의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신고, 반환, 거부의 의사표시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반환이나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언론사 관련 사례

Q19. A기업체 대표 B가 신문사 소속 특정 개인이 아닌 신문사 자체에 대한 기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19. 협찬 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신문사 임직원이 신문사 자체에 대한 협찬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더라도, 실제 기부금 수수 행위자인 공직자등으로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신문사 임직원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및 징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제21조), 제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대표 B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A기업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24조).

언론사 관련 사례

Q20. 언론사 보도국장 甲의 대학생 딸 乙이 아버지의 직속 부하 직원 A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로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20. 보도국장 甲의 대학생 딸 乙은 청탁금지법상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 주체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甲과 A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었고, 乙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할 경우에는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관련 사례

Q21. 공무원은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면 여러 번 받아도 되나요?

A21.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5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것이며(제8조제3항제2호),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액기준 내의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언론사 관련 사례

Q22.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는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받은 경우 가액을 합산하고 허용가액을 5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이 45,000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으면서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계 5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것인가요?

A22. 45,000원 상당의 식사대접과 동시에 5,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경우, 음식물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여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 음식물 가액은 3만원 이하, 선물 가액은 5만원 이하 기준을 각 충족하면서 동시에 합산한 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언론사 관련 사례

Q23. 대기업 홍보팀의 A부장은 업무상 알고 지내는 甲기자의 부친상에 조의금으로 10만원을 낸 후, 해당 홍보팀은 A부장의 이름으로 5만원짜리 조화도 별도로 보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23.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금 출처와 상관없이 동일인 명의인 대기업 홍보팀 부장 A로부터 총 15만원 상당의 부조금 및 조화를 받아 시행령에서 정하는 10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15만원 상당의 부조금 및 조화를 제공하였으므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A가 소속된 대기업은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언론사 관련 사례

Q24. 기업 홍보직원 A가 친한 기자 甲의 아들 돌 잔치선물로 1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보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24. 돌잔치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이 아닌 선물 5만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10만원 상당의 금반지는 선물 5만원 가액한도를 초과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언론사 관련 사례

Q25. ○○중앙부처 장관 A가 홍보 목적으로 일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간담회를 한 후, 인근 식당에서 기자 甲을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한정식을 샀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25.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참석 대상으로 하는 등 참석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점, 단순 홍보를 위한 경우로서 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정책설명회를 하면서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인당 5만원 상당의 한정식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음).

언론사 관련 사례

Q26. 기업 대표 A가 출입기자단을 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기자실을 만들어 취재공간을 확보하고 사무용품(TV, 복사기 등 지원) 지원 등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26. 특정 언론사들이 상주(또는 특정 언론사들에게 고정석을 부여) 한다거나, 식사나 선물 등 지나친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핑통 정도의 공간 확보와 이에 수반한 집기 등 간단한 편의제공은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상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8조제3항제8호).

언론사 관련 사례

Q27. 모 신문사 소속 간부 甲은 취재를 맡고 있는 출입기관(○○대기업) 직원 A로부터 자신들의 승진 축하 명목으로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는데, 즉시 반환하거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내부 직원에게 경매처분 후 그 수입금을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27. 선물을 받은 후 해당 선물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1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공직자등에게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A가 소속된 ○○대기업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언론사 관련 사례

Q28. 방송사 PD 甲은 선진 환경 우수사례 실태에 대한 보도를 계획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국가의 선진 해외 연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를 걸어 선진 우수사례 보도를 위한 취재가 필요하니 함께 데려가 줄 것을 요청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 시찰을 다녀온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A28. 공직자등인 甲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이상,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공직자등에게 1,000만원 상당의 해외시찰 비용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언론사 관련 사례

Q29. 기자 甲은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가전전시회(CES) 출장을 갔는데, 항공비(300만원)는 소속 언론사에서 부담하고 현지 체재비(700만원)는 국내 A가전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29.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7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가전회사 업무담당자는 공직자등에게 체재비 700만원 상당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A가전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업무담당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언론사 관련 사례

Q30. 유력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 승진한 언론사 간부 甲이 고등학교 동창이자 오래된 친구인 사업가 A로부터 승진 축하 기념으로 12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경우(甲과 A는 직무관련성 없음)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30.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12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공직자등에게 120만원 상당의 양복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언론사 관련 사례

Q31. 미국 주재 ○○일보 소속 특파원 甲이 주재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A의 직원 B로부터 동 기업이 운영하는 필리핀 소재 골프장 1년 무료 회원권(멤버십카드)(500만원 상당)을 제공 받은 경우(당시 프로모션 차원의 제공이라는 설명을 들었음), 甲,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31.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5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B는 공직자등에게 500만원 상당의 골프장 1년 회원권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한국기업 A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언론사 관련 사례

Q32. ○○언론사 甲기자는 A병원을 취재하면서 해당 병원 의사 B로부터 개인치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주요 고객 할인 명목으로 20만원을 부담하지 않는 혜택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32.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재 중인 병원에서 진료비 20만원 할인 혜택을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B는 공직자등에게 20만원 상당의 진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A병원 또는 A병원 개설자인 개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언론사 관련 사례

Q33. 언론사 소속 甲기자는 2명의 동료들과 퇴근 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출입처 홍보실 팀장 A를 만나 합석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A팀장은 일행과 합석하여 40만원 상당의 식사와 음주를 한 후 그 비용 일체를 지불한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33.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출입처 홍보실 팀장 A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공직자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접대를 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A가 소속된 출입처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언론사 관련 사례

Q34. ○○지방자치단체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는 A과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甲기자는 업무적으로 만날 일이 잦아 매우 친한 사이인데, 어느 날 A과장이 甲기자로부터 당장 필요한 현금이 없어 5만원을 뵈고, 다음날 돈을 갚으려하자 甲기자는 “그냥 술이나 한잔 사라”고 하여 A과장이 산 술값이 8만5천원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34.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변인실 과장 A로부터 3만5천원 상당의 주류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공직자등에게 3만5천원 상당의 주류 접대를 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언론사 관련 사례

Q35. 방송국 PD 甲은 자신이 연출하는 드라마 여주인공 배우의 소속사 A의 직원 B로부터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A사가 주최하는 10만원 상당의 공연 티켓 10장을 받은 경우 甲,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35.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연 주최측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공연티켓을 제공받았으므로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B는 공직자등에게 100만원 상당의 공연티켓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에 해당합니다.
소속사 A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제24조)에 해당하나, B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언론사 관련 사례

Q36.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카메라 감독 甲은 함께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 △△배우의 A매니지먼트 회사 소속 대표 B로부터 △△배우가 화면에 잘 나오도록 촬영해 줄 것을 부탁받으며 2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36.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드라마 촬영 등 직무와 관련하여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 B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으므로,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B는 공직자등인 카메라 감독에게 20만원 상당의 양주 선물을 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에 해당합니다.
A매니지먼트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제24조)에 해당합니다.

언론사 관련 사례

Q37. ○○신문사 소속 기자 甲, 乙, 丙은 출입처인 A대기업 홍보팀장 B로부터 주말에 골프접대를 받았는데, 골프비용 80만원 전액을 B가 결제한 경우 甲, 乙, 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37.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 乙, 丙은 직무와 관련하여 출입처인 대기업 홍보팀으로부터 1인당 2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으므로, 각각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B는 공직자등인 기자들에게 2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A대기업은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제24조)에 해당하나, 홍보팀 임직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언론사 관련 사례

Q38. 신문사 부장 甲의 승진 소식이 알려지자 A기업체 대표 B(직무관련성 있음을 전제)가 20만원 상당의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甲은 축하난을 받을 당시에는 비싼 난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가 얼마 후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문사 부장 甲은 면책될 수 있나요?

A38. 甲은 자신이 받은 축하난이 수수 금지 금품등(5만원 초과 선물)에 해당함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나중에 신고하였으므로, 지체 없이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가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제15조제3항).

언론사 관련 사례

Q39. 환경전문기자 ㉮이 기업(환경문제와 직결되는 업종의 기업)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연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사례금등 상한액 적용을 받나요?

A39. 위 세미나에서의 강연은 ㉮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환경전문 기자로서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 관련 사례

Q40. 언론사 기자가 국회조사처의 요청으로 원고지 150매의 기고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1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되는지요?

A40. 기고의 경우에도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언론사 기자의 경우 기고 1건당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합니다.



붙임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내용
- ▶ 청탁금지법-시행령(안) 2단 비교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I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경과 및 의의

1. 제정배경

-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해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 ※ 일반국민의 59.2%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
- OECD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공직자의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2. 제정경과

- 국무회의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 보고 시 **입법 필요성 제기**(’11.6.14)
 - ※ **공개토론회**(’11.10월, ’12.2월),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 연구(’12.4월~7월), 광주·대전·부산 등 권역별 대국민 법안 설명회 개최(’12.4월~5월) 등
- 정부입법절차 진행(’12.5.7~’13.7.30)
 - 관계기관 의견 조화·협의(’12.5월~’13.6월), 입법예고(’12.8.22~’12.10.2)
 - 차관회의(’13.7.26), 국무회의(’13.7.30) 의결
- 정부안 국회 제출(’13.8.5)
 - 정무위 공청회(’14.7.10),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15.1.8 등 6회 심사)
 - ※ 법안소위 : ’14.4.25, ’14.5.23, ’14.5.27, ’14.12.2, ’14.12.3, ’15.1.8
-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15.1.8),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15.1.12)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 적용대상은 사립학교·언론사까지 포함
- 법사위 공청회(’15.2.23),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15.3.3)
- 국회 본회의 의결(’15.3.3), 공포(’15.3.27, ’16.9.28 시행 예정)

3. 제정의의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청탁이 부정의 시작
 - 청탁금지법은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 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 공직자들이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음에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

□ 공직자·공적 업무 종사자의 보호

- 공직자들이 청탁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 청탁금지법은 청탁받은 공직자들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청탁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 보호
- 공직자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은 공직자의 이익으로 보아,
 - 청탁금지법은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하면 면책

II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1

법률 적용 대상

가.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나.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Q&A

- 국회의원도 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지되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대상직무에 한정

※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 인.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 입찰.경매 등에 관한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 병역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7개)

〈 부정청탁 예외사유 (제5조제2항) 〉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위반시 제재

구 성 요 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3자	사 인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Q&A

■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여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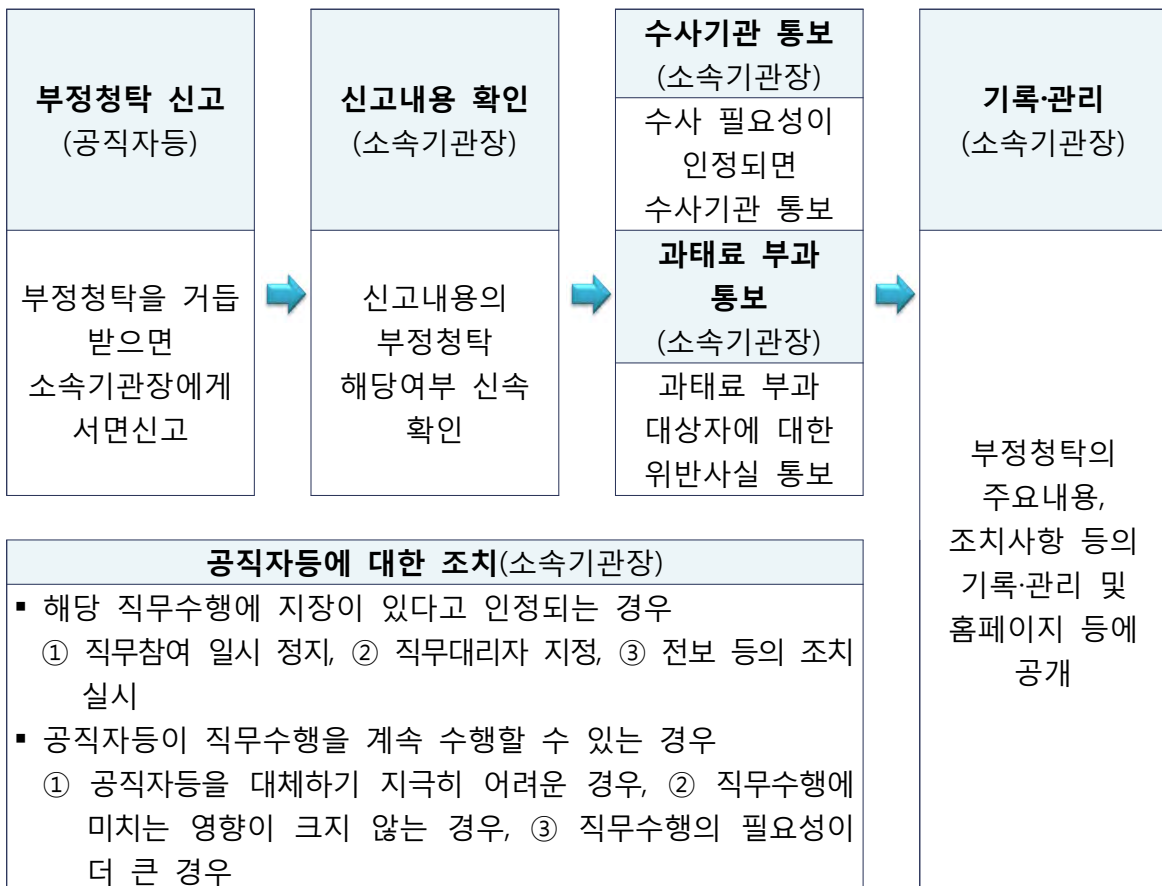
한편, 이해당사가 직접하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하는 부정청탁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의무**
-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
 -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 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 정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시행
 -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
- **(담당관)**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담당관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등을 담당
 - 그 외 소속 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 통보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 수수 금지 금품등 및 처벌 수준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Q&A

- 100만원을 기준으로 101만원이면 형사처벌, 100만원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그 기준이 정당한가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한번에 받은 금품등의 액수에 대해 100만원을 기준으로 제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하고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100만원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100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재의 종류를 달리 정하거나 제재를 가중하는 경우 기준과 근소한 범위 내에서는 죄질의 경중에 대한 의문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형법의 특별법인 특정범죄가중법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기부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이하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뇌물죄와 관련하여 「형법」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나,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최하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임

-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 〉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Q&A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회상규라는 기준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지 않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과정에서 불명확성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에서도 정당행위의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또한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마다 행위의 동기나 수단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세부 매뉴얼을 통해 ‘사회상규’를 포함하여 금품수수가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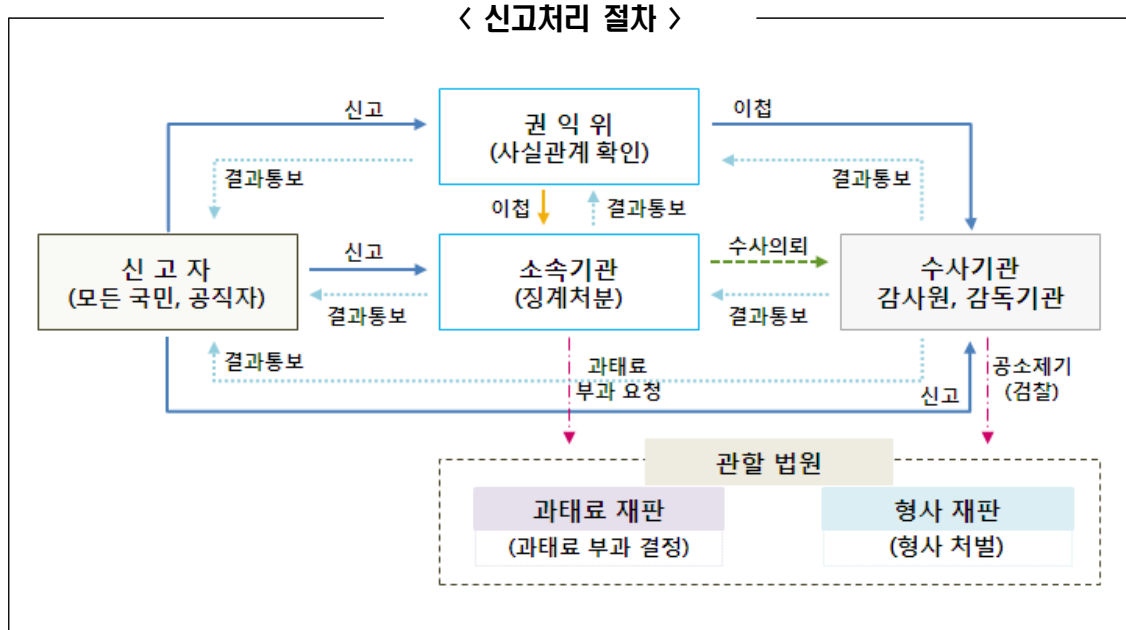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표시한 경우 제외

나.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
-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의무를 부여
 - ※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
 -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 의무를 부과
 -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

4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가.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절차



□ 신고방법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로 하고 허위 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 필요

□ 신고접수기관의 신고 처리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유무 등 신고내용을 확인 후 조사기관에 이첩
- 조사기관(권익위를 제외한 신고접수기관)
 - 신고를 받거나 권익위로부터 이첩을 받은 신고사건에 대해 조사·감사·수사 실시

- 조사기관은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자와 권익위에 통보(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
- 조사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
-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 또는 권익위에(권익위로부터 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재조사 요구

- 권익위는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 요구 가능
-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

Q&A

-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부정청탁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고자도 책임성을 갖게 하고 허위신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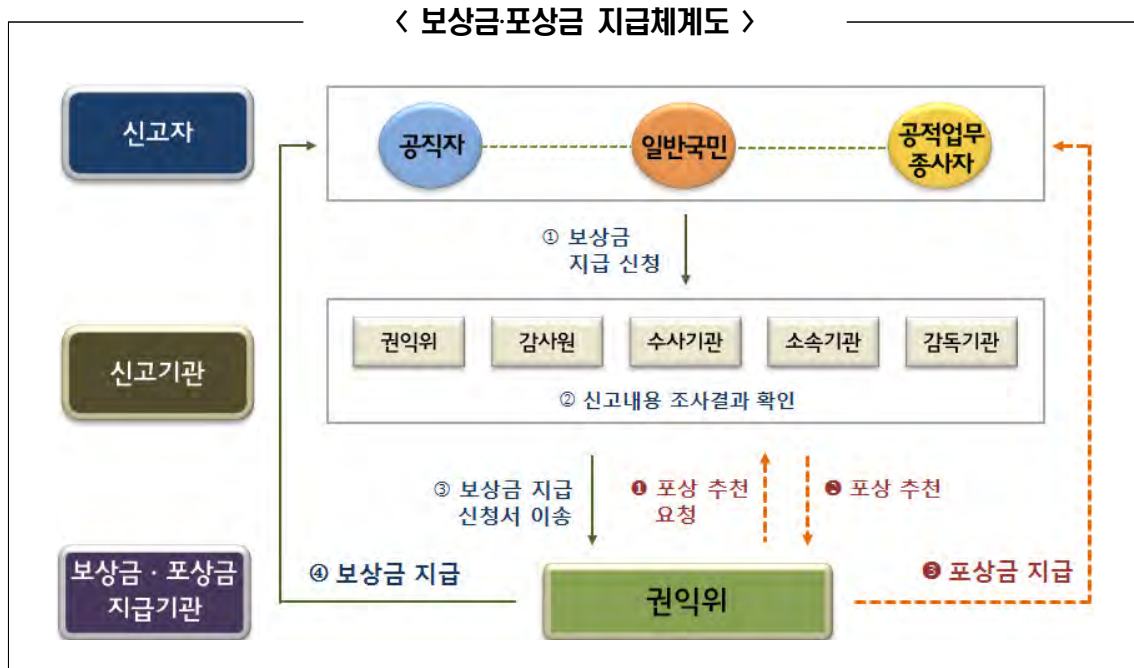
그 밖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 지급

5 징계 및 벌칙

- 의무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방안**을 마련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등 구체화**
-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거나 그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
-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등의 사업주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Q&A

-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 그렇습니다. 종업원이 사업주(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사업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함께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위반행위의 이익 귀속주체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 임과 동시에 그 행위를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내용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내용

□ 추진 배경

-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
- 법률의 시행에 대비하여 법률의 위임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을 마련

□ 추진 경과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5.3.27)
- 공개토론회, 각종 간담회, 설문조사, 정책토론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안 마련('15.3.~'16.5.)
- 대국민 입법예고 실시('16.5.13.~'16.6.22.)
- 성별영향분석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실시('16.6.~'16.8.)
- 규제심사('16.7.22) 및 법제심사('16.7.29. ~ '16.8.30.)
- 차관회의('16.9.1.)
- 국무회의 및 공포('16.9.6.)

□ 주요내용

- 윤리강령의 제정, 공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제2조)
 - 언론사 및 사립학교는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등(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 등은 신고자 및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이유 등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으로부터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안 제7조제2항)
 -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공동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사무분장의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의 이첩(안 제12조제1항)
 -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그 밖에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 이첩하도록 함
-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안 제17조 및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로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로 정함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액을 합산하고, 합산한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경조사비,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액의 합산하고, 합산한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경조사비,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안 제25조 및 별표 2)
 - 공무원과 자격·임용·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의 1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하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의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함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안 제27조)

-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을 그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소속기관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공직자 등은 지체 없이 초과하여 받은 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리도록 함.

○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39조)

-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안 제40조)

-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함께 국민권익 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41조)

-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총괄기관으로서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

목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조)	
부정청탁 금지 등	▶ 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제3조) ▶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 확인.처리 등(제4조~제7조) ▶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확인.처리 등(제8조~제10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확인.처리 등(제11조~제12조) ▶ 부정청탁 신고의 이첩.송부의 처리, 종결처리 등(제13조~제14조) ▶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제15조) ▶ 위반행위의 기록.관리(제16조)	
금품등 수수 금지 등	금품등 수수 금지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제17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방법(제18조) ▶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제19조) ▶ 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제20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이첩.송부의 처리, 종결처리 등(제22조~제23조) ▶ 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제24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제25조) ▶ 외부강의등의 신고, 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제26조~제27조) ▶ 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제11조)
	▶ 제공자에게 금품등,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비용의 청구(제28조)	
위반 행위의 신고·처리 등	▶ 법 위반행위의 신고(제29조) ▶ 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조치 등(제30조~제31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처리 등(제32조~제33조) ▶ 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제34조) ▶ 종결처리 등(제35조) ▶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36조) ▶ 수사 개시.종료의 통보(제37조) ▶ 신분보호 조치 등(제38조) ▶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제39조)	
보호·보상 등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제40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제41조)	
기타사항	▶ 윤리강령(제2조) ▶ 교육 등(제42조) ▶ 징계기준(제43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44조) ▶ 규제의 재검토(제45조)	



청탁금지법-시행령(안) 2단 비교표

청탁금지법 - 시행령 2단 비교표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	제2조(윤리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른 공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②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금품등 수수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강의·강연·기고 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그 밖에 공직자등의 청렴과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 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5.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결과와 통보 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장의 변경 제8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9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의 조치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2. 수사기관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제10조(감독기관 등의 조사 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 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사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4조(종결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3.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① 소속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기관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제3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7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확인 사항 및 처리 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5. 금품등의 반환 여부 6.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내용과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2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이첩 또는 송부 방법 및 이첩 또는 송부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이첩 또는 송부에 관한 조치 및 통보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3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인도받은 금품등과 제1항에 따라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첨부하여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조사등을 한 결과, 인도·이첩 또는 송부받은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요청 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27조(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공직자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0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2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조사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조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확인 사항,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 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장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②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5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6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신고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7조(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공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 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제40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장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 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	제42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43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 2.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부칙 <제13278호,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16. 9. 28.부터 시행한다.
	[별표 1] <u>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u>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table border="1" data-bbox="818 353 1358 842"> <tr> <th data-bbox="818 353 1254 450">구분</th><th data-bbox="1254 353 1358 450">가액 범위</th></tr> <tr> <td data-bbox="818 450 1254 577">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td><td data-bbox="1254 450 1358 577">3만원</td></tr> <tr> <td data-bbox="818 577 1254 705">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td><td data-bbox="1254 577 1358 705">10만원</td></tr> <tr> <td data-bbox="818 705 1254 842">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td><td data-bbox="1254 705 1358 842">5만원</td></tr> </table>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해서는 안된다. [별표 2] <u>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u>(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table><tr><td>구분</td><td>장관급 이상</td><td>차관급</td><td>4급 이상</td><td>5급 이하</td></tr><tr><td>상한액</td><td>50만원</td><td>40만원</td><td>30만원</td><td>20만원</td></tr></table>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table><tr><td>구분</td><td>기관장</td><td>임원</td><td>그 외 직원</td></tr><tr><td>상한액</td><td>40만원</td><td>30만원</td><td>20만원</td></tr></table> 다.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제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memo

memo

memo

memo